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867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상정	소위 심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50	손명수의원 등 11인	2025.12.29.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6.4.1.)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6.4.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29	김도읍의원 등 10인	2026.2.6.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6.4.1.)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6.4.15.)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1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성능·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조류예방 및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나, 현행법은 8km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제56조제5항 등).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공항 표점”이란 공항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는 지점을 말한다.

22. “조류유인환경”이란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하거나 서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로서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조류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차량 및 장비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을 것

가.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제외한다.

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제31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중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을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로 한다.

제5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며, 누구든지 해당 구역에서는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제1항 중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조류유인환경”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안전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제1항제7호 중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실시하지 아니한 자”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6호, 제31조의4, 제55조제1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류유인환경 설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 및 장비 중 제3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차량 및 장비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1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4	「공항시설법」 제56조제5항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
-----	-----------------	-------------

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7. (생략)

② ~ ⑤ (생략)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 ③ (생략)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6.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차량 및 장비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을 것

가.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제외한다.

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 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생략)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

검사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

-----.

제55조(출입·검사 등) ① -----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며, 누구든지 해당 구역에서는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여

② (생략)

<신설>

<신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나 안전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과태료)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조
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한 자

② -----

<p>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2. (생략)</p> <p>3.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u>실시하지 아니한 자</u></p> <p>4.·5. (생략)</p> <p>③ ~ ⑥ (생략)</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 -----<u>받지 아니한</u> <u>자</u></p> <p>4.·5.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	--